Ⅰ. 서론

1. 연구목적

1970년대 이후 금융위기 역사는 정책당국의 금리인하 대응과 거품에 따른 금리 인상 대응이 반복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보험회사의 부실 경험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능력 유지를 요구하는 지급여력규제 방식도 준비금 이외에 일정 금액을 획일적으로 모든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방식에서 보험회사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실(위험)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금액(요구자본)을 보험회사가 자본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지급여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그림 Ⅰ-1〉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파산 추이(1976~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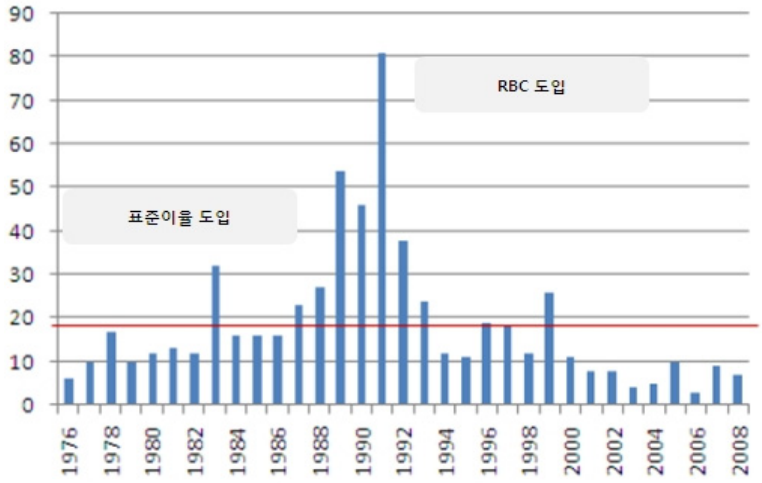

자료: A.M.Best(2009).

미국에서는 금리인상 시기에 보험상품의 가격자유화에 대응한 표준이율제도가 1980년에 도입되었고, 금리인하 시기에는 많은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위험기준 자본규제(RBC: Risk-based Capital)가 도입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급여력규제 개혁 작업을 통해 보험회사의 지배구조와 전사적 위험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에 주목하는 정성 평가(qualitative assessment)가 강화되고 있다.[1] 유럽에서도 지역통합을 계기로 공통 규제의 요구가 커지면서 Basel II의 3층 규제 체계(3-pillar system)를 토대로 하여 보험부채(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와 보험회사의 전사적 위험관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지급여력규제(Solvency II)가 추진되고 있다.[2]

이러한 지급여력규제의 변화는 시장경쟁이 다른 금융권역으로(권역 간 장벽 축소) 또는 다른 지역으로(국제화) 확대되면서 전사적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험회사 경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Ⅰ-2〉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와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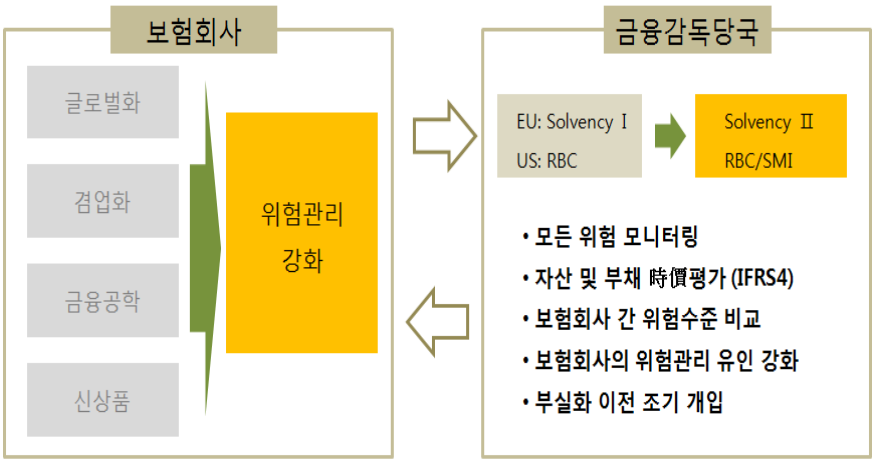

자료: 조재린 외(2013), p. 17.

1) 미국의 지급여력규제 개혁(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에 대해서는 김해식 · 조재린(2012) 참조.

2) 장동식(2009), 오창수(2012) 참조.

한편,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세계 각국의 보험감독에 공통으로 적용될 원칙 내지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가 2011년에 새롭게 제시한 보험핵심준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이 각국 보험감독의 준거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금융위기 이후 G20이 각국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관한 국제 기준의 영향력은 그동안 나라별 지역별로 진행되던 기존의 규제 변화와 비교하여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새로운 회계규제의 등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과 ICP 모두 현재와 같은 준비금의 원가 유지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부채 평가에 관한 국제회계기준(IFRS 4 phase 2)과 IAIS의 ICP 14(자산과 부채의 평가) 모두 보험회사가 보험부채를 시가(時價)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구나 IFRS를 전면 수용(full adoption)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가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시장에 공시해야 하므로 IFRS 4 phase II의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단순히 국제적 정합성 제고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ICP 14보다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하겠다.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인 변화는 이미 국내 보험감독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는 2011년 준비금과 보험료에 기초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EU Solvency I 방식에서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따라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RBC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12년부터는 RBC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RBC 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회계규제에서도 IFRS 4 phase II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부채적정성평가 기준이 시가평가에 준하는 형태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이 RBC 강화와 보험부채 시가평가라는 두 개의 파고를 동시에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재무 측면에서 충분한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보험부채와 자본 각각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준비되고 있으나, 정작 보험회사 지급여력 강화에 관한 전반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들 규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국내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과 최근 추진되고 있는 RBC 강화 계획 등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보험회사 지급여력 강화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특히 보험금 지급능력 유지는 좁게는 예상 손실에 대응한 준비금의 적정 적립과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한 자본의 적정 보유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급여력 유지를 넓게 보면 준비금과 자본은 물론 보험료의 적정성과 운용자산의 건전성, 그리고 예금자보험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림 Ⅰ-3〉 보험회사 지급여력 관련 규제

자료: 조재린 외(2013), p. 31.

이들 지급여력 관련 규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보험회사 지급여력 규제 강화 추세는 보험료나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경로를 거치는 데 대해 준비금이나 자본 관련 규제는 보완되거나 강화되는 경로를 밟아왔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부실 보험회사의 자연스런 퇴출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기금을 적립해놓는 예금자보호제도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간 상호 연관성은 현행 지급여력규제 체계에 대한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고민에도 드러나고 있다(문재익 2007). 문재익(2007)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표준책임준비금, 부채적정성평가, 자본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의 지급여력규제 강화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지급여력규제를 통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위험에 보험회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위험관리 유인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험금지급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보다 많은 위험을 계량화하여 지급여력규제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국이나 유럽의 지급여력규제 개선 작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 보험감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지급여력규제가 EU Solvency I 방식보다 위험을 세분화 한 RBC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금리위험을 회피하고자 장기자산 수요를 크게 늘리는 보험회사의 행태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Solvency I과 비교하여 RBC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 간 부(-)의 듀레이션 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CGFS(2011) 등은 이러한 지급여력규제의 강화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 기관투자가로서 보험회사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럽 Solvency II가 제시한 Pillar 1의 정량평가(quantitative assessment)방식이 보험업의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ampbell(2012)과 Vaughan(2009)은 유럽의 보험감독과 미국 보험감독 간에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위험평가척도, 신뢰수준, 위험평가기간 등에서 유럽 Solvency II의 Pillar 1과 미국 RBC의 요구자본 산출방식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은 지급여

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개혁 작업에서 기존의 자국 RBC 틀을 유지한 채 정성평가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Brahin(2012)은 아시아 각국이 자국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관하여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김해식 · 조재린(2013)은 RBC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논의가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RBC 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급여력규제 전반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연구범위와 방법

문헌 연구를 통하여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현황과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RBC 강화 계획, 그리고 지급여력규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지급여력규제 청사진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RBC 강화 계획과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보험회사 RBC 비율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규제 간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Ⅱ장은 현행 국내 지급여력규제를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위험기준자본규제(RBC)와 경영실태평가(RAAS)로 대별하여 살펴보고, 또한 지급여력평가와 관련된 부채의 주기적 평가(부채적정성평가 및 시가평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Ⅲ장은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와 관련하여 유럽과 미국의 규제 체계를 비교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Ⅳ장은 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RBC 강화계획과 IFRS 4 phase II 시행이 국내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RBC 강화계획의 영향은 보험회사의 RBC 비율에 가장 영향이 큰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의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RBC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고, IFRS 4 phase II 시행에 따른 영향은 준비금 평가

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낮은 무위험 수익률을 적용하여 보험회사 RBC 비율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 장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현행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향후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시장의 수용능력을 평가하여 지급여력규제의 개선 로드맵을 제안한다.